



의안번호	제 2020 - 28호
의 결 연 월 일	2020. 10. 23. (제105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목 차

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1
II. 양형기준 관보 게재 보고	
1. 개요	2
2. 추진 경과	2
III. 양형기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1. 개요	3
2. 추진 경과	3
IV. 2020년도 국정감사 수감	
1. 개요	4
2. 주요 보고내용	4
3. 주요 질의 및 답변내용	4
V. 2019 연간보고서 발간 경과 보고	
1. 개요	13
2. 수록 내용	13
3. 2019. 4. 27.~2020. 4. 26.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내용 요약	13
4. 추진일정	16
VI.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1.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가. 개요	17
나. 회신 완료 접수의견	17
다. 회신 미완료 접수의견	20

2. 서면 질의 등 민원 및 회신

가. 국민신문고 게시판	21
나. 민원 우편	23



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 운영지원단은 전문위원 전체회의의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음
- 전문위원 전체회의 개최 현황

회의명		일 시	안 건
전문위원 전체회의	제136차	2020. 10. 12. 1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침입범죄의 설정 범위, 유형 분류○ 환경범죄의 설정 범위, 유형 분류

II. 양형기준 관보 게재 보고

1. 개요

-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및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양형기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양형위원회 제104차 회의에서 의결된 『강도범죄,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관보 게재를 통하여 공개하였음

2. 추진 경과

- 2020. 9. 14. 양형위원회 제104차 회의 : 강도범죄,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 2020. 9. 22. :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 의뢰 공문 시행
- 2020. 10. 6. : 양형기준 관보 게재
(<http://gwanbo.mois.go.kr>)

Ⅲ. 양형기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1. 개요

- 양형위원회에서 의결된 양형기준은 형사재판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에 양형기준을 공개하는 것은 양형기준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양형기준 개선 논의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에 최종 의결된 강도범죄,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2. 추진 경과

- 2020. 9. 23. : 홈페이지 게재 의뢰(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시행일	범죄군	게재 경과
2020. 10. 15.	강도범죄,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	2020. 10. 12. 게재

IV. 2020년도 국정감사 수감

1. 개요

- 2020. 10. 7. 10:00 국회 본관 제406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2020년도 국정감사 실시
- 위원장이 직접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을 보고하고, 법제사법위원장 및 법제사법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및 서면질의에 답변

2. 주요 보고내용

- 양형위원회 현황, 2020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및 향후 계획

3. 주요 질의 및 답변내용

가. 구두질의

- (소병철 위원) 양형위원회는 현재 법조인 또는 법률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 역대 양형위원장도 법조인들이 맡아 왔음. 미국에서는 가급적 법조인이 양형위원회 구성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우리나라 양형위원회가 만드는 양형기준이 법조인의 시각만을 담아낼 뿐 일반 국민의 시각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됨. 양형위원장 재직 중 양형위원회 구성에서 일반 국민(비법조인)의 비율을 늘려주시기 바람
 - (위원장) 양형기준에 일반 국민의 상식을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 지적에 공감함. 다만, 양형위원회 구성은 법률로 정해져 있어 양형위원장이 임의로 구성할 수 없음(법관 4인, 검사 2인, 변호사 2인, 법학교수 2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인). 실제로 영국 양형위원회는 법관의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상황임
- (송기현 위원) 양형위원회에서 성범죄 양형기준을 상향하여 주시기 바람

나. 소병철 위원 서면질의

- (1) 법원 기망행위에 대한 대처

○ 양형기준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양형기준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 지적에 깊이 공감합니다.
- 위원님께서 예로 드신 손정우 피고인에 대한 ‘부양가족이 있음’ 사유는,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감경요소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권고 형량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형량을 결정하는 일반양형요소는 단지 양형기준에 기재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양형요소가 다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요소를 양형 요소로 고려할지는 개개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 한편, 성범죄 양형기준에는 ‘진지한 반성’이 일반감경요소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은 피고인의 내심을 판단해야 하는 재판 작용이고, 그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정의를 두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과정에서도, ‘진지한 반성’은 개개 사건에서 해당 재판부가 충실한 양형심리를 통해 신중히 판단할 문제로, 이는 일반감경인자로 두었습니다.
- 한편, 대필한 반성문이 제출된 경우 이를 ‘진지한 반성’으로 평가하여 감형을 할 법관은 없으리라 생각되지만, ‘반성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는 위원님의 지적은 공감합니다.
- 향후에도 성범죄 양형기준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과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국민의 건전한 상식 반영 못하는 양형기준

○ 양형위원회 구성의 문제: 양형위원 대부분이 법관, 검사, 변호사 및 법학교수 전문가로 구성되어 일반 국민의 상식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임

- 양형기준에 일반 국민의 상식을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현행 법원조직법은 양형위원회 위원장 외 12인의 양형위원 중, 법관 4인(상임위원 포함), 검사 2인, 변호사 2인, 법학교수 2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인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양형위원회의 구성은, 형사재판의 본질적 영역에 속하는 양형의 기준 설정을 주된 업무로 하는 양형위원회의 성격상, 형사재판 실무자와 법학자 위주의 토론 및 운영이 필수적임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일반국민의 건전한 상식도 양형기준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감안하여, 2인의 학식·경험 있는 양형위원 임명, 공청회, 의견조회, 자문위원회 회의 등 다양한 경로의 국민의견 수렴절차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 입법이 필요하지 않은 영역에서, 양형위원회의 노력으로 일반 국민의 상식을 더욱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 양형기준 설정 절차의 문제: 양형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초안을 작성하고, 각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객관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에 따라 활동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의 재판에서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절차를 위한 절차’로서 작동하지 실제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

- 양형기준 설정 절차에서도 일반 국민의 상식을 반영할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 양형기준 설정 절차는 양형기준안을 작성하기 전에는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여러 의견을 양형위원회에 보고하여 회의 자료로 삼고, 양형기준안 공개 후에는 ① 공청회, ②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 7.부터는 ③ 양형기준안에 대한 행정예고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양형기준안을 공개하여, 일반 국민 누구나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두었습니다.
- 최근 공개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라도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의견을 조회하는 관계기관도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하여 52개 기관에 의견을 조회하였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설정 절차에서도 국민의 상식과 목소리를 최대

한 반영하는 방법을 찾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 타국 양형위원회와의 비교: 미국과 영국의 양형위원회는 그 구성에 차이는 있으나 비법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회의를 더 자주 열고 공개하여 더 많은 참여자를 모아야 한다는 점에서 일치했음. 회의록이 기록·보관되지 않고, 회의 내용이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양형위원회는 13년 전의 미국과 영국의 양형위원회에 비해 더 폐쇄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양형위원회의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함
 - 양형위원회가 폐쇄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 양형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말씀 드리면, 우리나라는 위원장 및 위원 포함 13인 중 법관은 4인, 다른 직역은 9인이어서, 법관의 비율은 30.7%(4/13)입니다. 반면, 영국은 양형위원회 위원 14인 중 8인이 법관이어서 그 비중은 57.1%(8/14)이고, 미국 연방은 투표권 있는 위원 7인 중 3인 이상이 법관이어서 그 비중은 최소 42.9%(3/7)입니다[영국 양형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영국의 양형기준제도-양형기준 제도의 법령 및 현황-(2015), 49면 이하 및 인터넷 사이트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9/25/schedule/15> 참조하였습니다. 미국 연방의 양형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https://www.ussc.gov/about/who-we-are/organization> (미국 연방 양형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양형위원회의 법관 비중이 가장 낮습니다.
 - 우리나라 양형위원회는 비록 양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공개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대강의 회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형기준 설정 절차에서도, 양형기준안을 작성하기 전에는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여러 의견을 양형위원회에 보고하여 회의 자료로 삼고, 양형기준안 공개 후에는 ① 공청회, ②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 7.부터는 ③ 양형기준안에 대한 행정예고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양형기준안을 공개하여, 일반 국민 누구나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두었습니다.

- 미국과 영국 양형위원회의 운영방식을 참고하여, 양형위원회가 폐쇄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더욱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판에 있어 가해자 중심으로 적용되는 양형기준: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의 평판, 주취, 초범, 친족관계에서의 부양 사실 등 6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꾸준히 국민이 비판하고 있는 양형기준임. 특히 위의 사유들은 감형을 받기 위해 가해자들이 꾸준히 만들어내는 논리이기도 하며, 특정 로펌 등에서는 이를 활용해 가해자들의 형을 줄이는 것을 마케팅으로 삼기도 함. 사법부는 형을 줄이기 위해 양형기준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음을 숙지하고, 이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여 사법 신뢰를 회복하여야 할 것임. 또한 각 법관의 성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강구하여야 할 것임

- 성범죄 양형기준이 가해자 중심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6가지 사유, 즉 ① 진지한 반성, ② 사회적 유대관계, ③ 피고인의 평판, ④ 주취, ⑤ 초범, ⑥ 친족관계에서의 부양 사실 중 ③ 피고인의 평판이라는 사정은 성범죄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나 집행유예 기준에서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 한편, 성범죄 양형기준에는 ① ‘진지한 반성’이 일반감경요소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은 피고인의 내심을 판단해야 하는 재판 작용이고, 그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정의를 두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과정에서도, ‘진지한 반성’은 개개 사건에서 해당 재판부가 충실한 양형심리를 통해 신중히 판단할 문제로, 이는 일반감경인자로 두었습니다.
- ② 사회적 유대관계는 그 결여 또는 분명 여부가 집행유예 기준 중 일반참작사유에, ⑥ 친족관계에서의 부양 사실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이 역시 집행유예 기준 중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에 각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양형인자로 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④ 주취는 감경인자에서 제외하거나 오히려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강제추행죄, 장애인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균형법상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⑤ 초범에 대해서는, 현재 성범죄 양형기준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일반참작사유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양형위원회에서는 최근 의결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요소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여야 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감경요소로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는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성범죄 양형기준이 가해자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는지를 점검하고, 추후 성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할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음주운전 언제까지 솜방망이 처벌만?

- 사법부의 판결, 양형위원회의 기준 신설 등, 사법부 역시 음주운전의 위

협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 국민은 음주운전에 대해 극도로 우려를 표하고 있음. 음주운전은 ‘(음주자가) 고의로’ ‘인명·재산 사고를 낼 수 있는’ 위험한 범죄임. 국민이 우려하는 만큼, 사법부도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해 판단해 주기 바람

- 음주운전 범죄의 경우 엄정한 양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에 깊이 공감합니다.
- 양형위원회는 2018. 11. 19. 「음주와 양형」을 주제로 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였고, 7기 양형위원회에서는 개정 윤창호법을 포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7기 양형위원회가 수정한 양형기준은 2020. 4. 18. 의결되어 2020. 7.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음주 등으로 인한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엄정한 양형을 위해 양형기준 대유형을 신설하여 양형기준의 형량 범위를 상향하는 것입니다. 양형기준 수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래 「일반 교통사고」 유형에 속하였던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별도로 분리하여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 신설하고 형량범위를 상향
 - 위험운전치사죄의 경우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8년(중전 일반교통사고치사의 가중영역 상한은 3년)으로 설정 / 위험운전치상죄의 경우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5년(중전 일반교통사고치사의 가중영역 상한은 2년)으로 설정
 - 특별가중인자인 동종누범에는 위험운전치사상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죄 전과를 포함하여 가중처벌
 - 교통사고 후 도주에 대해 엄정한 양형을 권고하는 의미에서 일부 형량범위를 상향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치상 후 도주	6월 - 1년 1년6월	8월 - 1년6월 2년6월	1년 - 3년5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치상 후 유기도주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5년 7년
3	치사 후 도주 (도주 후 치사)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8년
4	치사 후 유기도주 (유기도주 후 치사)	3년 - 5년	4년 - 6년	5년 - 8년 10년

- 양형위원회는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의 적용 결과를 지켜보고 통계적으로 분석한 후 양형기준 수정 여부를 논의하겠습니다.

(4) 피해를 국민을 위로하는 법의 따뜻함

- 같은 범죄라 해도 있는 자는 가볍게 처벌받고, 없는 자는 무겁게 처벌받고 있음. 일례로 재벌은 횡령이나 금융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나라경제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어 감형을 받고, 빈곤한 자는 생계형 절도를 저지르더라도 한 달 생활비에 버금가는 벌금을 내야 함. 이런 법 집행은 공정하지 않음. 반대로 배달노동자가 생계를 위해 과속, 교통법규 위반을 한 것과 고급 외제차를 타고 즐거움을 위해 과속, 교통법규 위반을 하는 것에 같은 양형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공평과 형평의 원칙이 무너진 우리 사법체계의 슬픈 자화상임

- 양형에 공평과 형평이 지켜져야 한다는 위원님 지적에 깊이 공감합니다. 과거 화이트칼라 범죄(재벌 범죄)에 대한 양형이 관대하였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뇌물, 횡령·배임,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조세범죄 양형기준을 정함에 있어 과거의 실무관행보다 엄정한 권고 형량을 설정하였고, 양형기준 시행 후 양형의 적정성과 일관성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에서는 2019. 11. 25. 「화이트칼라범죄와 양형」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뇌물범죄와 횡령·배임범죄의

양형실무 및 양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화이트칼라 범죄(재벌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더 숙고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V. 2019 연간보고서 발간 경과 보고

1. 개요

- 2020. 4. 20. 양형위원회 제101차 회의에서 ‘2019년도 연간보고서 발간계획안 확정 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연간보고서 발간을 추진 중임

2. 수록 내용

- 2019. 4. 27. ~ 2020. 4. 26.까지의 제7기 전반기 양형위원회 활동 및 2020년도 양형위원회 활동 계획

3. 2019. 4. 27. ~ 2020. 4. 26.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내용 요약

가. 양형위원회 전체회의(8회)

차 수	일 시	안 건
94차	2019. 5.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기 양형위원회 출범식 및 임명·위촉장 수여식 ▪ 1~6기 양형위원회 활동 경과 보고 ▪ 2019년 운영지원단 주요 추진 업무 보고
95차	2019. 6.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 선정 의 건
96차	2019. 9.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심의(설정범위, 유형분류) ▪ 균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안 심의(설정범위, 유형분류) ▪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안 심의(적용범위, 유형분류)
97차	2019. 10.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확정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심의(범죄군 명칭, 형량범위) ▪ 균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안 심의(형량범위) ▪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안 심의(형량범위)
98차	2019. 12.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심의(양형인자, 집행유예기준)
99차	2020. 1.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안 심의·확정 ▪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확정 ▪ 선거범죄 수정안 의견조회 검토 및 의결
100차	2020. 2.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양형기준안 심의(설정범위, 유형분류)

차 수	일 시	안 건
		류) ▪ 양형기준 해설 수정안 심의
101차	2020. 4. 20.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심의 ▪ 공청회 개최 계획안 ▪ 2019년 연간보고서 발간계획안 ▪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조회 검토 및 의결

나. 전문위원 회의

(1) 전체회의(9회)

차 수	일 시	안 건
125차	2019. 5. 20.	▪ 제7기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대상범죄군 선정 검토
126차	2019. 8. 26.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검토(설정범위, 유형분류) ▪ 균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안 검토(설정범위, 유형분류) ▪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적용범위, 유형분류)
127차	2019. 9. 30.	▪ 선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검토(범죄군 명칭, 형량범위) ▪ 균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안 검토(형량범위) ▪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형량범위)
128차	2019. 10. 7.	▪ 선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129차	2019. 11. 11.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검토(양형인자, 집행유예기준)
130차	2019. 12. 23.	▪ 균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안 검토(양형인자, 집행유예기준) ▪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양형인자, 집행유예기준) ▪ 선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검토)
131차	2020. 1. 30.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양형기준안 검토(설정범위 및 유형분류) ▪ 양형기준 해설 수정안 검토
132차	2020. 3. 9.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검토) ▪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검토)

차 수	일 시	안 건
133차	2020. 4.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군(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등을 통합한 하나의 범죄군) 명칭 검토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형량범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검토

다. 심포지엄

(1) 양형연구회 3차 심포지엄 개최(2019. 6. 3.)

- 디지털 성범죄 특히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양형실무를 분석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바람직한 양형 및 양형기준이 무엇인지, 나아가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 보호 및 피해회복방안은 무엇인지 등 다양한 관련 주제에 관하여 학계와 실무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함

- 대주제 :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

- 소주제 :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과 양형』 ,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회복과 양형』

(2) 양형연구회 4차 심포지엄 개최(2019. 11. 25.)

- 화이트칼라범죄(뇌물범죄와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2009. 7. 1.부터 시행되었는데, 이에 대한 양형은 다소 가볍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양형기준 설정 이후의 양형실무를 분석하고, 현행 양형기준의 양형인자 또는 집행유예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관하여 학계와 실무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

- 대주제 : 『화이트칼라범죄와 양형』

- 소주제 : 『공무원(뇌물)범죄의 양형』 , 『횡령·배임범죄의 양형』

라. 양형체험 프로그램

-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 추가 콘텐츠 오픈 (2020. 2. 3.)

-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국민들로 하여금 실제 사례를 기초로 제작된 영상 프로그램에 직접 판사로 참여하여 양형 판단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국민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련 형

법 및 양형기준에 대한 알기 쉬운 설명자료를 통해 형사재판 절차와 양형의 과정 및 양형기준에 대한 이해 제고

- 2018. 1. 2. 오픈한 ‘2018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살인죄’와 ‘절도죄’의 실제 사례를 재구성하여 영상 콘텐츠를 제작
- 기존에 제작된 체험 대상 범죄군 다양화라는 체험자들의 요구에 응답하고자, 2018년에는 국민적 관심도 및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 콘텐츠(강제추행, 보이스피싱사기)를 제작하여 ‘2019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을 2019. 3. 8. 추가 오픈
- 국민적 관심도와 범죄의 발생빈도가 높은 ‘교통범죄(도주치상)’와 ‘공무집행 방해범죄’를 추가 콘텐츠로 제작하여 2020. 2. 3. 오픈

마. 관계기관 의견조치

- 선거범죄, 교통범죄, 균형법상 성범죄

4. 추진 일정

- 연간보고서 초안 작성: 2020. 10. 말까지
- 견본 제작: 2020. 11. 초순
- 교정 작업: 2020. 11. 중순
- 인쇄 의뢰 및 제작: 2020. 11. 하순
- 국회 보고 및 배부: 2020. 12. 중순

VI.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1.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가. 개요

- 양형위원회의 활동 및 양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국민 참여 공간인 '양형위원회에 바란다'(<http://sc.scourt.go.kr>)에 접수된 의견 보고

나. 회신 완료 접수의견(총 437건): 동일 요지 의견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로 회신함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의견요지
1	2020.5.16.~5.31. (265)	○ 디지털성범죄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하는 내용
2	2020.5.17.~5.18.(6)	○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하는 내용
3	2020.5.17.~5.19.(3)	○ 취지불명
4	2020.5.17.~5.20.(4)	○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고, 디지털성범죄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 및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하는 내용
5	2020.5.19.~5.31. (158)	○ 디지털성범죄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내용
6	2020.5.22.(1)	○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당연퇴직하게 된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며, 향후 모든 공무원이 억울하게 퇴직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내용

○ 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디지털성범죄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양형기준을 강화해야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디지털성범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안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성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3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20. 4. 22.자)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작성한 글만으로는 민원취지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릴 수 없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4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고, 디지털성범죄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 및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디지털성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를 포함한 모든 성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5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디지털성범죄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디지털성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개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유형 분류, 권고 형량 범위 조정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양형기준 최종 의결일이 2020년 12월7일로 결정된 부분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주신 의견은 디지털성범죄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6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개별적인 재판진행 및 결과에 관여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다. 회신 미완료 접수의견(2020. 6. 1.까지 접수된 의견 중 미회신 의견, 총 46 건)

- ▶ 동일 요지 의견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로,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할 예정입니다.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의견요지
1	2020.6.1.(46)	○ 디지털성범죄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내용

2. 서면 질의 등 민원 및 회신

가. '국민신문고 게시판'

- 회신 완료 접수 의견(2020. 9. 21.까지 총 5건)

순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질의요지
1	2020.8.5.(1)	○ 여성 인권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여 달라는 내용
2	2020.8.6.(1)	○ 형법을 개정하여 최고 형량과 최저 형량을 규정하고, 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
3	2020.9.5.(1)	○ 아동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여 달라는 내용
4	2020.9.17.(1)	○ 엄벌주의와 범죄 예방은 관련이 없다는 내용
5	2020.9.21.(1)	○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

○ 1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중 양형관련으로 양형위원회에 이첩(2020. 08. 05. 접수번호:2AA-2008-0143931)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 중 여성인권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여성인권과 관련된 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2020. 08. 06. 접수번호:2AA-2008-0185174) 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형법을 개정하여 최고형량과 최저형량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은 입법과 관련한 내용이므로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3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2020. 09. 05. 접수번호:2AA-2009-0160032) 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아동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아동성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4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2020. 09. 17. 접수번호:2AA-2009-0533078) 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5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2020. 09. 21. 접수번호:2AA-2009-0653426)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회신 미완료 접수 의견(2020. 10. 7.까지 총 1건)으로 빠른 시일에 회신할 예정입니다.

순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질의요지
1	2020.10.7.(1)	○ 위증, 무고, 사기범죄가 많은 이유는 처벌이 가벼워서 이므로 양형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내용

나. 민원 우편

○ 접수 의견

	접수일자	질의요지
1	2020.8.18.(1)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송부하여 달라는 내용
2	2020.9.1.~9.16.(3)	○ 변호사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을 송부하여 달라는 내용
3	2020.9.3.(1)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형사범죄) 각 범죄 유형에 관한 양형기준(유형),(양형인자)표를 송부하여 달라는 내용

○ 1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20. 8. 18.자)에 대한 회신입니다.
- 현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귀하가 요청한 양형기준을 송부하여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에 따라 관보 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양형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 양형기준」 책자는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관계기관(교도소 포함) 등에 배포하였으므로 그곳에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며,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r>) 양형기준 코너에도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20. 9. 1.자, 20. 9. 4.자, 20. 9. 16.자)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하가 요청하신 변호사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을 별첨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에 따라 관보 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양형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 양형기준」 책자는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관계기관(교도소 포함) 등에 배포하였으므로 그곳에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며,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r>) 양형기준 코너에도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3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법제처에 접수(접수번호:7052766, 접수일:20. 8. 28.자)된 민원 중 양형위원회에 이송된 귀하의 민원서(20. 9. 3.자)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하가 어떠한 범죄의 양형기준을 요청하는지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 양형기준 책자는 재판 실무에서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데 참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된 수량만을 발간하고 있으며, 별도 판매나 제공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에 따라 관보 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양형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 양형기준」 책자는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관계기관(교도소 포함) 등에 배포하였으므로 그곳에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며,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r>) 양형기준 코너에도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